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8월 11일 15시 14분



목차

목차	2
고시공고 - 전체	3
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	3

고시공고

완료된 고시공고

이전자료(~2011.1.9)

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

2024.07.10 00:00 공고(일반공고)

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

2024년 제2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(공고)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0일

여수시장

1. 행정예고 내용: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

가.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일자

※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

나. 세부장소 : [붙임 1]참고

2. 관련근거 :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3. 예고(공고)기간 : 2024. 7. 11.(목) ~ 7. 22.(월), 12일간

4. 예고(공고)방법 : 여수시 홈페이지(<http://www.yeosu.go.kr>)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(☎061-659-4162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사항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CCTV 설치 위치, 찬·반 여부와 그 이유 등)

나. 제출기한: 2024. 7. 11.(목) ~ 7. 22.(월) 18:00, 12일간

다. 제출처: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

라. 제출양식:[붙임 2]참고

마. 제출방법: 직접 방문, 우편, 팩스

- 방문/우편: 여수시 시청로 1,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(학동) (우)59673

*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

- 팩스: 061-659-5864 ※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

바. 문의사항: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(☎061-659-4162)

※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첨부파일

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(2회차 심의대상).hwp

[미리보기](#)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Yeosu Web Contents

